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2. 7. 4.] [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-26호, 2022. 7. 4., 일부개정]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검역검사과), 051-400-5732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제110조에 따른 수산물·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어패류"란 어류, 패류,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을 말한다.
- 2. "신선・냉장품"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(維持)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℃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・식물을 말한다.
- 3. "냉동품"이란 수산동・식물을 원형(原形) 또는 처리・ 가공하여 동결시킨 제품을 말한다.
- 4. "건제품"이란 수산동·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(삶는 방식, 굽는 방식, 염장(鹽藏)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) 제품을 말한다.
- 5. "염장품"이란 수산동・식물을 식염(食鹽)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(酒精)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.
- 6. "조미가공품"이란 수산동・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・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(煮熟)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(쥬스류) 등의 제품을 말한다.
- 7. "어간유・어유"란 수산동물의 간장(肝腸)에서 추출한 유지(乳脂)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(어간유)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(어유)를 말한다.
- 8. "어분・어비"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・압착・건조하여 분쇄한 것(어분)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・압착・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(어비)을 말한다.
- 9. "한천"이란 홍조류 중의 한천성분(다당류)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추출·응고 및 건조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.
- 10. "어육연제품"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·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(qel)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.
- 11. "통・병조림품"이란 수산동・식물을 관 또는 병에 넣어 탈기・ 밀봉・살균・냉각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말한다.
- **제3조(수산물・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)** ①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・수산가공품 (이하 "수산물 등"이라 한다)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수매(收買) · 비축하는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등의 검사기 준은 별표 1에 따를 것
- 3.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
- ② 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「식품위생법」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·규격을 적용한다.
-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·수입국(수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검사 신청인이 요구하는 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·규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.
- 제4조(수산물 등의 표시기준) ① 수산물 등에는 제품명, 중량(또는 내용량), 업소명(제조업소명 또는 가공업소명), 원산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. 다만,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, 대형수산물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5조(재검토기한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 <제2022-26호,2022.7.4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